

#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5 -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	2005. 5.
발 의 자	신주범 의원외

## 1. 개정이유

-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의 지정확대를 위하여 추천권 자를 군청의 실과장, 사업소장, 읍면장으로 확대하고
- 대상자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위원회를 대신하여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명예군민 수여대상자는 거창군민이 아닌 자로서 거창군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 시키고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로 규정함(안 제2조)
- 수여대상 추천권자는 군 관내 공공기관의 장, 사회단체의 장, 10인 이상의 군민, 군청의 실·과·사업소장, 읍·면장으로 규정함(안 제3조)
- 수여대상자 결정은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토록 하고, 외국 귀빈등에 대하여 시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를 생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함(안 제4조)
-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군민증서와 기념품을 수여토록 규정함.  
(안 제5조)
-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는 혜택과 군 위원회의 위원 위촉, 각종 행사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기회를 부여함(안 제6조)
-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경우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, 취소시 본인에게 통보토록 규정함(안 제7조)

## 3. 제정(법적)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

##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조례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”를 “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”로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거창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·외국인에 대한 거창군명예군민증(이하 “명예군민증”이라 한다)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수여대상)**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거창군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·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1. 대외적으로 거창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
2. 문화·예술·체육·교육·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
3.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
4.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**제3조(수여대상자의 추천)**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

1. 거창군 관내 공공기관의 장
  2.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거창군 관내 사회단체의 장
  3. 10인 이상의 군민
  4. 군청의 실·과·사업소장, 읍·면장
-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[별지 제1호서식]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수여대상자의 결정)**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

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거창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수여방법 및 부상)**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[별지 제2호서식]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.

② 군수는 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후관리)**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거창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[별지 제3호서식]의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수여취소)**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